공고 제 1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01월 05일

양강면장 (인)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**	조** 1970-08-15	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5-01-05